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1
----------	------

제출연월일 : 2020. 5.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첫째아이부터로 함(안 제1조)
- 나. 첫째아이 출산장려금 30만원 지원기준 확대(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모자보건법 제3조
- 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 ~ 제10조
- 다.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1조

6.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비고
변경전 대상자 수	1,025	1,067	1,150	1,150	1,150	5,542	
변경후 대상자 수	1,695	2,400	2,500	2,500	2,500	11,595	
대상자수 증감	670	1,333	1,350	1,350	1,350	6,053	

변경전 예산액	639	660	705	705	705	3,414	
변경 후 예산액	840	1,059.9	1,110	1,110	1,110	5,229.9	
예산증감	201	399.9	405	405	405	1,815.9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0년 4월 23일 ~ 5월 13일(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 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셋째아이” 를 “첫째아이” 로 한다.

제3조 중 “둘째아이는” 을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아이는”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첫째아이부터 적용한다.

부서명		건강증진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건강증진과장 박은숙
	팀장 직위·성명	지역보건팀장 서명순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서명순 (790-5276)

■ 【 모자보건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

제11조(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출산 지원 사업
3.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일·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7.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원기준 확대(안 제3조)
 - 첫째아이 출산 장려금 30만원 지원 추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출산순위비율 : 첫째아 54%, 둘째아 38%, 셋째아 이상 8%(하남시 출산장려금 지급액 기준'19.10.)
- 2) 2019년 10.31.월말 출생아 1,837명(인구증가 등으로 추정 연간 출생아수 2,200명)

나. 추계결과

1) 총괄예산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비고
변경전 대상자 수	1,025	1,067	1,150	1,150	1,150	5,542	
변경후 대상자 수	1,695	2,400	2,500	2,500	2,500	11,595	
대상자수 증감	670	1,333	1,350	1,350	1,350	6,053	
변경전 예산액	639	660	705	705	705	3,414	
변경후 예산액	840	1,059.9	1,110	1,110	1,110	5,229.9	
예산증감	201	399.9	405	405	405	1,815.9	

※ 위례, 감일지구 입주계획 등 인구증가 등으로 출생아수 산정

(감일 지구 : 2020년 11, 835명, 2021년 12,529명, 2022년 이후 6,674명)

(위례 지구 : 2020년 510명, 2021년 9,248명, 2022년 이후 1,250명)

※ 하남시 출생아 비율(0.8%) : 신생아 출생아수 / 총 인구수*100 로 산정하여 추정 적용

※ 하남시 출생아수 비율 (3년간) : 0.75 ~ 0.79%

2016년 1,600/211,101(0.75%), 2017년 1,857/232,487(0.79%), 2018년 1,949/254,415명 (0.76%)

※ 출처 : 하남시 인구현황 (통계청<http://kosis.kr>), 하남시 민원여권과 주민등록 인구현황(출생), 하남시모자보건 현황 등

2020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단위 : 천원)

출생 순위	변경이전		변경이후		예산증감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수	금액	
첫째아	-	-	670	201,000	201,000
둘째아	836	418,000	836	418,000	0
셋째아	163	163,000	163	163,000	0
넷째아	20	40,000	20	40,000	0
다섯째아 이상	6	18,000	6	18,000	0
계	1,025	639,000	1,695	840,000	201,000

2021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단위 : 천원)

출생 순위	변경이전		변경이후		예산증감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첫째아	-	-	1,333	399,900	399,900
둘째아	878	439,000	878	439,000	0
셋째아	163	163,000	163	163,000	0
넷째아	20	40,000	20	40,000	0
다섯째아이상	6	18,000	6	18,000	0
계	1,067	660,000	2,400	1,059,900	399,900

2022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단위 : 천원)

출생 순위	변경이전		변경이후		예산증감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첫째아	-	-	1,350	405,000	405,000
둘째아	954	477,000	954	477,000	
셋째아	170	170,000	170	170,000	
넷째아	20	40,000	20	40,000	
다섯째아이상	6	18,000	6	18,000	
계	1,150	705,000	2,500	1,110,000	405,000

2023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단위 : 천원)

출생 순위	변경이전		변경이후		예산증감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첫째아	-	-	1,350	405,0000	405,000
둘째아	954	477,000	954	477,000	
셋째아	170	170,000	170	170,000	
넷째아	20	40,000	20	40,000	
다섯째아이상	6	18,000	6	18,000	
계	1,150	705,000	2,500	1,110,000	405,000

2024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단위 : 천원)

출생 순위	변경이전		변경이후		예산증감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첫째아	-	-	1,350	405,0000	405,000
둘째아	954	477,000	954	477,000	
셋째아	170	170,000	170	170,000	
넷째아	20	40,000	20	40,000	
다섯째아이상	6	18,000	6	18,000	
계	1,150	705,000	2,500	1,110,000	40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시비 100%
- 혁신기획관과 협의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하남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박은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840	1,059.9	1,110	1,110	1,110	5,229.9
자체예산(시비)	840	1,059.9	1,110	1,110	1,110	5,229.9
재원 조달	840	1,059.9	1,110	1,110	1,110	5,229.9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840	1,059.9	1,110	1,110	5,229.9
	지방세	840	1,059.9	1,110	1,110	5,229.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